

[일련번호 : 1]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보슬레이스켈레톤연맹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보슬레이스켈레톤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보슬레이스켈레톤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 및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규약 및 기타규정을 절차에 맞게 의결하여 제·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sup>1)</sup>,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sup>2)</sup>에 따라 규약 및 기타 제규정을 최신화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는 규약의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반영이 요구될 경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하고 제52조(규약변경)에 따라 절차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52조(규약변경) ① 도종목단체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도종목단체의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5.19.>

2)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도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한다.

③ 도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2016년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의 통합 당시 경기도종목단체의 해산 및 재구성 당시 제정했던 규약 승인 외 2020년도 미승인된 대의원으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규약 승인을 요청<sup>3)</sup>하였으나 당시 종목을 관리하는 종목지역파트(現종목육성팀)의 미승인 통보<sup>4)</sup>되었다.

또한 규약에 따르면 2016.05.28. 제정 이후 총 5회<sup>5)</sup> 개정된 사항이 있다 표기되어 있으나 승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도에는 11월21일에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개정된 것처럼 표기되어 있는 등 규약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규약을 재정비하여 본회(종목육성팀)에 승인 받고 기타규정은 상위단체인 본회 및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기타 규정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약 및 기타 규정의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공정감사실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경기도봅스연맹-21(2020.11.30.)

4)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3925(2020.12.17.)

5) 개정표시일: 2017.01.21. / 2018.01.27. / 2019.02.09. / 2020.11.21. / 2023.02.04.

[일련번호 : 2]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지출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조직 운영,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회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은 각종 사업 진행을 위해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체육회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해야하며 본회 「회계규정」 제4조(일반원칙)<sup>6)</sup>, 제42조(지출원인행위)<sup>7)</sup>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5항<sup>8)</sup>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지출품의)로 집행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자 결재를 득한 후 지출결의를 통해 지출하는 등

6) 제4조(일반원칙) ①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체육회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2. 모든 회계정보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증빙으로 하고 전표에 의한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3. 회계처리기준과 절차는 매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4. 회계처리과정에서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는 체육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7) 제42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8)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방법)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공정하고 타당하게 집행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고 지출원인행위를 비롯한 지출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보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수감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국도비를 비롯한 자체비에서도 집행품의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집행하였고 전국동계체육대회를 비롯한 대회출전 보조금에 대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수의 지출을 단일 건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 회계처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보조금 지출에 있어 각종 증빙을 근거로 지출을 해야함에도 지출을 증빙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출을 하는 등의 체계적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회장은

2023년도부터 품의 및 집행에 있어 원인행위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및 자체비 지출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기 바라며, 현재 지적된 증빙서류(사진, 견적서, 타견적서 등)를 보충하여 본회로 보고하기 바라며, 향후 회계관리에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경기도체육회

## 개선조치

[제 목] 각종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경기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수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sup>9)</sup>,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sup>10)</sup> 등에 따라 연맹은 사업 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9)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도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도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2.5.19.>

⑤ 도종목단체의 등록선수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0)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종목단체가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5.19.>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도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이외 다른 위원회는 설치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각종위원회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연맹은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임에도 전문체육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회장은

연맹의 기능과 역할을 고민하고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의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고민하고 개선하여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경기도체육회

## 권고조치

[제 목]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맹 「규약」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회계 업무 수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본회 「회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맹은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직원에게 해당하는 회장, 사무국장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봄슬레이스켈레톤연맹장은

직무관련 재산상 사고에 대비하여 연맹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소신과 책임 있는 회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 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